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59,153,701	34,774,611
일반회계	981,840,385	29,455,212
특별회계	177,313,316	5,319,399
공기업특별회계	154,120,385	4,623,6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736,970	982,1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105,877	1,653,17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277,538	1,988,326
기타특별회계	23,192,931	695,7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4,000	8,82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952,719	238,5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65,013	115,950
수질개선특별회계	6,947,224	208,41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623,075	108,69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10,900	15,32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32,27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